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68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박상웅 · 정동만 · 조은희
강승규 · 김상훈 · 박준태
윤한홍 · 이달희 · 이종욱
강대식 · 최보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연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선임 후에 강습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전단 중 “사람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제3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여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 ② (생략)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 ----- ----- ----- ----- ----- ----- -----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u> ----- -----<후단 삭제>
<신설>	1.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신설>	2. 제3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여 강습교육을 받은

④ ~ ⑥ (생 략)	<u>사람</u> ④ ~ ⑥ (현행과 같음)
-------------	-----------------------------